



#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COVID)-19 산업지침:

물류 및 창고 <u>시설</u>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



# 개요

2020년 3월 19일에 주보건공무원과 캘리포니아 보건부의 책임자 인구 사이에 COVID-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민들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이나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은 아직 전체적으로 알려진바는 없습니다. 보고된 질병은 사망을 초래할 수도있는 아주 경미(어떤 이는 무증상을 가지고 있슴)하고 심한 질병까지 다양합니다. 65세 이상 연령의 사람들과 심장 및 폐병과 같이 심각한 잠재된 의료상태 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특정그룹은 입원과 심한 합병증의 고위험군입니다. 감염은 사람들이 가까운 접촉을 하거나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해도 감염된 사람과 통풍이 잘되지않는 지역에 있을 때 거의 발생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근로자들을 포함한 산업과 직업군에의한 COVID-19의 숫자와 요율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이 시점에 아직 유효하지 않습니다. COVID-19감염에 걸리고 감염시키는 위험에 놓인 근로자들을 표시하는 작업장의 범위에 많은 발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업장의 예를들면 병원, 장기간의 보호시설, 감옥, 식품생산, 창고, 육류공정공장 및 식품범을 포함합니다.

자택대기명령이 수정되면서 근로자들과 공공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절차를 밟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주요 방지실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 가능한 한 최대의 물리적 거리두기,
- ✓ 근로자들 (호흡방호가 필수로 되어있는 곳), 고객/의뢰인의 얼굴 가리기 사용하기.
- ✓ 자주 손싯기 및 정규적인 청소 및 소독살균,
- ✓ COVID-19 방지계획의 이런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서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추가로 작업장에서 질병의 새로운 건들을 식별하는 적절한 절차를 취하는 것과 식별될 때 신속하게 개입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을 멈추는 공중위생권한과 작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목표

이 문서는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창고 산업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Cal/OSHAL의 지침과 같이 카운티 보건명령을 포함하거나 기존 안전 및 보건관련 필요조건을 대체하지 않고 법으로 정하거나, 규제력을 지니거나 단체적으로 교섭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철회하거나 최소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COVID-19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공중위생지침 및 주/지역 명령에 대한 변경을 유지합니다. Cal/OSHA는 물류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감염예방 에 대한 좀 더 안전한 보건지침은 Cal/OSHA COVID-19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CDC는 사업체와 고용주들 그리고 우편 및 소편배달 에 대한 특정지침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지침들에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지니고 있습니다.

# 안면 가리개의 필수 사용

6월 18일, CDPH 는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모든 공중 및 작업장 환경에서 공중 및 근로자들의 구성원들에게 얼굴 덥개를 사용할 것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u>안면 가리개의 사용지침</u>을 발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민들은 작업장 혹은 부지 밖에서 수행하든지 일에 개입되었을 때 안면 가리개를 다음의 경우 사용해야만 합니다:

- 공공의 구성원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 때;
- 그 시점에 일반대중이 있었던지와는 상관없이 공공구성원들이 방문했던 공간에서 작업할 때:
- 음식이 준비되거나 판매의 의도로 포장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분배는 공간에서 일할 때;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시설과 같은 공통영역에서 일하거나 지나갈 때;
- 육체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가족 혹은 거주인구성원들은 제외) 혹은 이 있는 방 안 혹은 밀폐된 지역에 있을 때;
- 대중교통수단 혹은 승객이 있는 준공공교통기관 차량, 택시 혹은 자가용차 서비스 혹은 탑승공유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할 때. 승객이 없을 때에도 안면 가리개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런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 및 제외사항을 포함한 완전한 세부사항은 <u>지침</u>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들에서도 안면 가리개는 강력히 권장되는 바이며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책임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안면 가리개 요구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 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를 쓰는 것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용정책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질병때문에 안면 가리개를 쓸 수없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접촉 하게되어서 안면 가리개를 써야만 하는 경우에 실현가능하고 질병이 허용한다면 아랫면에 접착된 천으로 얼굴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비제한적 대체방법을 제공해야만합니다.

일반인에 열려있는 사업체들은 CDPH 안면 가리개지침에 안면 가리개를 쓰는 것의 제외사항을 인식하여야하고 그 사람이 지침에 준수한다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일반인 한 명 아무라도 제외시키지 말아햐합니다. 사업체들은 고객들과, 의뢰인들, 방문객들과 근로자들 사이의 이런 제외사항들을 취급할 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작업현장 구체방안

- 모든 시설에 작업현장에 구체화된 서면 COVID-19 예방계획을 형성하고, 모든 작업지역 및 작업업무의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각 시설에 사람을 지정합니다.
- 작업현장 구체방안에 <u>CDPH 안면 가리개지침</u> 을 설립하고 제외사항을 취급하기위한 정책을 포함합니다.
- 근로자들 사이에 COVID-19 발발에 관한 정보를 소통하기위하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보건부의 연락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방안에서 근로자들과 근로자대행인을 훈련시키고 소통하고 근로자와 그들의 대행인들에게 유용한 방안을 만드십시오.
- 방안과 서류를 준수하는 작업장을 정규적으로 평가하고 알아낸 부족한 사항을 수정하십시오.
- COVID-19 질병을 조사하고 작업관련된 요인이 감염의 위험성의 원인이 될 수 있었는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건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새롭게하십시오.
- 작업장에 질병이 발발되었을 때 <u>CDPH 지침</u>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 및 연구계획서를 실행하십시오.
- 감염된 근로자와 가깝게 접촉한 자들(15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6피트이내에)을 알아내고 COVID-19확진자(들)과 가깝게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하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 다음의 지침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불이행하는 것은 임시로 폐쇄된 곳 혹은 제한된 곳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장에서 질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씁니다.



# 근로자 훈련 주제

- <u>COVID-19</u> 정보 전파를 막는 방법과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 바이러스에 좀 더 쉽게 감염되도록 만드는 것.
- <u>CDC 지침</u>을 이용하여 체온 및/혹은 증상검사를 포함하여 자택 내에서 자가검진
- 집으로 오지 않게하는 중요성:
  - o 열 혹은 오한, 기침, 숨참, 혹은 호흡곤란, 피곤함, 근육 혹은 신체통증, 두통, 입맛 혹은 냄새의 손실, 인후염, 울혈 혹은 코감기, 메스꺼움, 구토

혹은 설사와 같은 <u>CDC에 의해 설명된</u>바와 같이 COVID-19의 증상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거나,

- o 근로자가 COVID-19로 진단되었고 격리로부터 아직 해제되지 않았거나,
- o 지난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COVID-19에 진단된 누군가와 접촉되었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고려됩니다 (예: 아직 격리 중).
- 증상이 일차 나타난 후 10일이 지났다면 근로자가 COVID-19 진단을 받은 후에 작업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증상이 개선되고 근로자가 지난 72시간 동안 열(열을 감소시키는 약의 사용없이)이 없었어야 합니다. COVID-19을 진단 받았던 무증상 근로자는 첫 COVID-19 확진검사일 이후에 10일이 지났다면 작업장으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통증 혹은 가슴의 압박, 혼동 혹은 파랗게 질린 입술 혹은 얼굴을 포함하여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를 받습니다. <u>CDC's 홈페이지</u>에 새로운 내용과 자세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 (CDC 지침 에 의하여 근로자가 싱크대 혹은 손닦는 위치로 가지 못할 때)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고 (혹은 최소한 60% 애타놀(선호함)이 들어있는 손소독제 혹은 70% 이소프로파놀 (제품이 비감시하의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을 포함하여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닦는 중요합니다.
- 직장 및 휴무 때 신체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아래의 육체적 거리두기 항를 보시오).
- 안면 가리개의 적절한 사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안면 가리개는 쓰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보호장비(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쓰는 사람 근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있으나 신체적 거리두기 및 자주 손닦기의 필요성을 대체시키지 못합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덮어야만 합니다.
  - o 근로자들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거나 조정하기 전과 후에 손을 닦거나 소독해야합니다.
  - o 운, 코, 잎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o 안면 가리개는 공유하지말고 각 교대조이후에 세척하거나 파기해야만합니다.
- <u>얼굴 가리개의 사용을 위한 CDPH 지침,</u>에 있는 정보는 안면 가리개를 써야하고 예외사항은 물론 정책, 작업규정 및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용주가 도입한 관행의 상황을 법으로 명령합니다. 연수는 안면 가리개로부터 제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고용주의 정책을 포함시켜야합니다.

- 시설의 하도급계약자들, 임시 혹은 계약직사원들 또한 COVID-19예방정책에서 적절하게 훈련되어야하고 필요한 부품 및 PPE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하십시오. 임시 및/혹은 계약직사원들을 제공하는 기구와함께 미리 이런 책임들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질수 있는 지불된 유급휴가에 대한 정보는 자택에 머무르는 것을 재정적으로 좀 더 쉽게 만들 것 입니다. 명령이 실효되는 동안 주지사의 <u>행정명령 N-62-20</u> 에 준한 COVID-19 <u>가족 우선의 코로나대응법안</u>과 작업관련추정 하의 근로자들의 병가권리를 포함한 <u>COVID-19을 위한 병가 및 상해자보험을 지지하는 정부프로그램</u>에 대한 추가정보를 보십시오.



# 개별적 억제조치 및 검진

- 시설에 들어오는 근무조를 시작하는 모든 직원 및 상인, 하도급자, 및 다른 직원들에게 체온 및/혹은 증상검진을 제공합니다. 체온/증상 검진자는 가능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대체방법인 자택 자가검진이 요구된다면 직원이 근무조를 위해 자택을 떠나기 전 근로자 검진이 실행되었는지와 상기 훈련항의 주제에 설명된 바와같이 CDC 지침을 따르는지 확인하십시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권장합니다.
- 고용주들은 필요한 곳의 눈보호 및 장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보호장비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확실히 사용하도록해야만 합니다.
- 고용주는 자주 손씻기 혹은 손소독제 사용의 대체방법로 1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것과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고려합니다; 예로는 증상이 있는 다른 사람을 검진하는 직원들 혹은 공동으로 접촉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 청소 및 소독에 대한 행동강령

- 휴게실, 점심식사 장소, 및 탈의실 및 계단 및 계단통, 난간, 엘리베이터 제어기를 포함한 출입지역과 같은 왕래가 많은 지역의 빈틈없는 청소를 실행합니다. 탁자, 편의시설, 손잡이, 변기통 및 손씻는 시설을 포함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합니다.
- 근무조 사이 혹은 사용자들 사이에 작업면, 기계, 공구, 장비, 선반, 저장고, 손잡이, 걸쇠 및 자물쇠, 고정 및 이동장비 제어의 어느 것이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나 제한하지 않고 만질 수 있는 표면을 청소합니다.

- 시간기록계 및 지게차와 같은 공유장비를 사용하는 사이에 손을 닦고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가능한 전화, 다른 작업공구 혹은 장비를 공유하는 것을 피합니다. PPE(개인보호장비)를 절대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 배달 전후에 배달 차량 및 장비를 청소하고 배달되는 동안에 추가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며 각 배달 정지 장소에서 청결한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십시오.
- 배달운전자에게 일반적으로 배달 도중(예, 화장실, 커피숍)에 이용하는 화장실이 닫혀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대체 화장실의 장소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근무조에 청소관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업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부분으로 근무시간 동안에 지정되어야합니다.
- 소독시설은 운영되고 매일 제고가 있어야하며 필요할 때 추가 비누, 종이수건, 손소독제를 확실히 제공해야합니다. 필요하거나 실현 가능하다면 추가 소독시설(이동 화장실 및 손소독구역)을 제공합니다.
- 육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하고 화장실을 자주 청소하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 실현 가능하다면 휴식시간의 시간간격을 둡니다.
- 화학물질 소독을 선택할 때 고용주는 환경 보호국 (EPA)-승인된 목록에 포함된 COVID-19를 상대로 사용되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제품 사용방법을 따릅니다. 최근에 생겨난 바이러스성 병균체,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 (1갤론 물에 5개의 찻숟가락) 혹은 표면에 최소한 적당한 70% 알코올 용액에 효과적인 라벨이 붙은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화학적위험, 제조업체의 안내서, 필요 환기량,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한 Cal/OSHA 요구사항에 대한 훈련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세제 혹은 소독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제품 안내서에 의해 요구하는대로 장갑을 착용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보건국에서 \_ 추천한 천식에 안전한 청소방법을 따르고 적절하게 반드시 환기를 시킵니다.
- 근로자에게 배달된 상품을 내리고 저장할 때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해야 합니다. 배달이 느슨해졌다고 보일 때 창고 및 시설에서 상품을 저장하기 전 근로자들은 배달내용을 조사하고 소독대책을 수행해야합니다.
- 가능하다면 병원체가 공기로 분산될 수 있는 쓸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곳에 HEPA(고성능 미립자 제거)와 함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휴대용 고성능 공기청전기를 설치하고, 가능한 최고로 높은 성능에 건물의 공기여과기로 개선하고, 바깥 공기량, 작업장 및 휴게실의 통풍 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개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십시오.



#### 신체적 거리두기 지침

- 운송직원을 포함하여 근로자들 사이에 최소한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확보하는 방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어디에 서야하는지 표시하는 바닥표시, 색테이프, 혹은 표지판과 같은 신체적 위치 및 시각신호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 창고직원 및 운송직원 사이의 상호작용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실현가능하다면 디지털로 정문에서 수속을 밟고 문서업무를 수행해주십시오.
- 직원들 사이에 최소한 6피트를 허용하여 작업장 및 공유된 외부공간을 변경하십시오.
- 고객과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수정된 업무선택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특히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작업장의 COVID-19의 전염을 예방하는 다음 체계를 이용하십시오: 엔지니어링컨트롤, 관리통제, 및 PPE.
  - o 엔지니어링컨트롤은 플렉시 글라스(특수 아크릴 수지) 및 다른 견고하고 불침투성과 같은 근로자들 사이의 신체적 혹은 공간방어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 관리통제는 한 번에 머무르는 직원의 수를 감소시키며 적절한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근무조의 수를 증가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 PPE 는 안면 가리개, 몇 몇 종류의 마스크, 와 불침투성의 장갑을 포함합니다. 인공호흡기와 같은 1회용 장비들은 의료인들과 병원균을 취급하는 직원에게 우선순위로 제공되며 그 외에는 사용되지말아야하는 것을 참조하십시오.
-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안전과 다른 미팅을 조정하고 신체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에서 좀 더 적은 개인적 회의를 실행하십시오.
- 한 번에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는 실행가능한 작업관행을 이용합니다. 이는 일정을 정하거나 (예: 분산된 교대조시작/종료시간) 근무시간동안에 지정된 지역에 교대로 근무조가 접근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작업을 분산시키고 근무조가 중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을 마련합니다.
- 바이러스의 감염을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6피트 이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의 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 신체적 거리두기 규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급 및 시간규정에 준수하여 근로자 휴식을 분산시킵니다.
- 휴게실을 닫고, 장벽을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분리시키고 휴식시간 동안 군집을

막는 탁자/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립니다. 가능하다면 신체적거리를 확실히 하는 그늘덮개 및 좌석을 가진 옥외 휴게소를 만드십시오.

• 인원들이 쉽게 모이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지역을 폐쇄시키십시오 (예를들면 부엌, 휴게소,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직원들을 막아주십시오.

1추가 요구사항은 취약한 인구에 고려되어야만합니다. 물류 및 차공산업은 <u>Cal/OSHA</u>의 모든 기준을 준수해야 만 하며 <u>질병관리 및 예방센터 (CDC)</u> 과 <u>캘리포니아 보건부 (CDPH)</u> 로부터의 지침 또한 Cal/OSHA의 지침 또한 충실히 지키는 준비를 해야만합니다. 추가로 고용주들은 그런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그들의 운영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만 합니다.

